

#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       |              |
|-------|--------------|
| 발의년월일 | 2015. 2. .   |
| 발 의 자 | 윤종호 의원 외 10명 |

#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윤종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15. . .

발 의 자 : 윤종호, 김상조, 김인배, 김재상,  
김정곤, 박교상, 안장환, 윤영철,  
임춘구, 정근수, 한성희

## 1. 제정 이유

-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점차 다양화·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안 제2조)
-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추진사업 규정(안 제5조, 6조)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위원회 설치(안 제7조)

사.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아. 홍보 및 포상 근거 마련(안 제9조, 10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 **5. 관련부서 협의**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별도 의견없음

#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구미시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미경찰서, 구미시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

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2012.5.30.>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